

상지대학교 소수집단학생 지원 지침

제정 2024. 02. 28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소수집단학생이란 본 대학에 재적 중인 장애학생, 외국인 유학생, 다문화가족 학생,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주관부서) ① 소수집단학생 지원과 관련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학생 지원 : 장애학생지원센터
2. 외국인유학생 지원 : 국제교류처 국제교육팀
3.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 지원 : 학생지원팀, 학사관리팀

② 제1항의 주관부서는 소수집단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 및 학부(과)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범위) 소수집단학생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2. 대학생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
3. 도우미(멘토)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소수집단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장애학생은 「장애학생 지원 규정」,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팀 관련 제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, 위원은 국제교육원장, 심리상담·인권센터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, 기획예산팀장, 학사지원팀장, 학생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2. 소수집단학생 지원 지침에 관한 사항
3. 소수집단학생의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소수집단학생 지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운영세칙)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